

제 202201043 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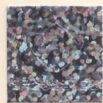
형 식 승 인 서

신청인 성 명 : 이상환
상 호 : (주)미래디앤에스
사업장주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83, 나동 (목행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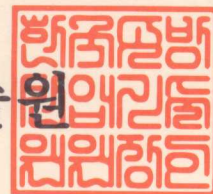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·제10항 및 제37조제1항 및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·제9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용품의 형식을 승인합니다.

1. 품 명 완강기지지대
2. 형 식 내벽 부착형, 최대사용하중 1 500 N, 회전각도 90°
3. 형식승인번호 지지22-10
4. 조 건
5. 비 고

2022 년 11 월 10 일

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


검 사 성 적 서


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: 031-289-2817, Fax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201043

페이지 : (1) / (총 2)

1. 신청인 원 본 재발급
○ 업체명 : (주)미래디앤에스
○ 주 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83, 나동 (목행동)
○ 접수번호 및 접수일 : 제2200470호 2022. 08. 29.
2. 검사성적서의 용도 : 형식승인용
3. 검사대상 종별(품명) : 완강기지지대
4. 검사기간 : 2022. 08. 29. ~ 2022. 11. 10.
5. 검사방법 : 소방청고시 제2017-1호(2017.07.26.)
6. 검사장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7. 검사환경
○ 온 도 : (20.0 ± 5.0) °C, 습 도 : (43 ± 7)% R.H.
8. 검사결과 : 합격
※첨부 : 세부 형식시험 결과(2 페이지 참조)

확 인	실 무 자	기술책임자
	성 명 : 전 명 호	성 명 : 이 주 설


위 성적서는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사결과입니다.

2022 년 11 월 10 일

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(인)

- 비고 1.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으며, KS Q ISO/IEC 17020 및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습니다.
2.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,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,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.

[첨부]

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	성적서 번호 : 202206043 페이지 : (2) / (총 2)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: 031-289-2817, Fax: 031-287-9066	

형식시험결과

업체명	(주)미래디앤에스	형식승인번호	지지22-10
품명	완강기지지대	형식	내벽 부착형, 최대사용하중 1 500 N, 회전각도 90°

시험항목			결과			비고
조항	항목	기준	시료(개)	검사결과	판정	
제16조	지지대의 구조	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	5	적합	합격	
제17조	최대사용하중 및 최대사용자수	최대사용하중이 1 500 N 이상의 하중인지 여부	2	적합	합격	
		최대사용자수(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함)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(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함)으로 함	2	적합	합격	
제18조	재료	지지대는 금속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, 비내식성 재료일 경우 내식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벽부착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(KS D 3698)를 사용하는지 여부	시험생략		합격	*
		지지대 내식가공의 확인은 염수분무시험방법(중성,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(KS D 9502))에 의하여 5회(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, 정지 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) 시험하는 경우 부식생성물이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여부	시험생략			
제19조	강도시험	지지대는 연직방향으로 최대사용자수에 5 000 N을 곱한 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·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없는지 여부	2	적합	합격	
제20조	충격시험	지지대를 제조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한 후, 표준강하속도를 가지는 시험장치 또는 특정 완강기를 지지대에 설치한 상태에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부착부분으로부터 강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0.5 m 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의 충격하중으로 낙하시키는 경우에 파괴·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여부	2	적합	합격	
제21조	표시	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	5	적합	합격	

※기타 : "*" 표시는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2항 및 동 업무세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임

“끝”